

## 정치와 법 - 25학년도 9월 평가원 5번

1. 헌법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 위헌 심사형
  -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인용(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위헌 법률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⑥** ~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한편,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을은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내용도 챙겨야 합니다.

※ **재심 제도:**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수능특강 132p)

3. 재심 절차에서 을은 ○○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을은 재심 절차, 항소, 상고를 거쳐 징역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판결은 징역 2년으로 확정되었지만, 을은 징역 2년 6월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이 끝납니다.

4. 을은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형사 보상 제도:** ~ 국가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수능특강 132p)

- 을은 형사보상법 □□조항이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공권력의 불행사)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헌법 소원 심판(권리 구제형)을 청구하였습니다.
- 억울하게 6월 옥살이했는데, 이에 대해 □□조항이 형사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는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무죄 재판을 받지 않은 을에게는 □□조항이 아닌 형사보상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에게 맞는 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평가원 시험에서는 모든 문장이 중요하고 버릴 문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조항은 정말 중요하고 버릴 내용이 아니라서 라기 보다는 실제로 있는 판례를 가져오다 보니 불가피하게 들어간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c 선지에 직접 대응되는 문장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2년)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7. 이에 따라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기>

-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 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X).
-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심판 대상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 이는 5번 문장에 나오는 '□□조항이 아닌 형사보상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에서 심판 대상은 법 조항이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습니다.
- ㄴ. 을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O).
-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 작용(불행사)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 맞습니다.

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형사 보상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과잉 금지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그 수단은 국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어야 하며,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수능특강 28p).
-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 요건 중 방법 요건에 해당합니다.

※ 그럼 ‘기본권 제한’은 왜 하는 걸까요?

- 기본권의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회 질서, 공동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국가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비상 35p).
- 하지만 기본권은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비상 35p).
- 선지의 논리에 따르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 이상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런데, △△조항은 ‘재심 판결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 △△조항은 형사보상법의 조항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회 질서, 공동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 아닌 것입니다.
-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입법)을 해달라고 한 것이 요지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을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3. 12. 29>